



직업 자유냐, 생존 문제냐... 법에 묻는다 ‘안마의 자격’

-비장애인 안마사 고용의료법 위반 혐의 어느 업주의 항소심

“찜질방, 목욕탕, 스파숍, 피부미용실, 그리고 길거리 로드숍에서 50만명 가량이 이 일로 먹고산다. 그러나 자격을 가진 이는 수천명뿐이다. 이들이 다 전과자가 돼야 하는가?”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했다 재판에 넘겨진 업주 A씨를 대리한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한 대목이다. 이 의견서는 재판부를 움직였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유사한 혐의로 다른 1심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의 혐의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그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는 2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2일 진행했다. A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비시각장애인들을 고용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고, 항소심에선 A씨가 유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사건이 병합됐다. 검찰은 이날 두 사건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병합 구형했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한다. 그리고 ‘자격이 필요한 안마’



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인 ‘안마사 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해당 규칙은 사실상 거의 모든 안마와 마사지 형태를 포괄한다.

이에 따르면 스포츠 마사지 등은 물론 미용실 등에서 하는 지압까지도 시각장애인에게만 자격이 허락된 셈이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는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하고, 생활화된 마사지 문화, 비시각장애인 종사자들이 이미 수십만명에 이르는 현실 등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실제 안마사실소 대부분은 폭력·유혹 자본에 의해 운영되며 시각장애인들은 바지사장으로 이용되거나 안마대금 18만원 중 2만원 정도만 받고 일을 하는 처지’라며 “‘장애인 복지’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1심 재판부 두 곳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정종건 판사는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열어주면 차별받아온 소수자인 시각장애인에게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9월 같은 법원의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건강상 위해 우려가 없는 안마 형태까지도 ‘자격이 필요한 안마’로 포괄하는 ‘안마사 규칙’은 ‘보건·위생상 위해 방지’라는 모법(의료법)의 위임 취지를 일탈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직업선택권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야 함에도 ‘규칙’에 위임돼 있어 법률유보의 원

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봤다. 최 판사는 “하급심 재판부도 ‘법률’이 아닌 ‘규칙’의 위법·위헌성은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이래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가 열악한 상황에서 규제를 풀 경우 비시각장애인들과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차별에 노출되는 등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반면 비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어 규제로 인한 직업선택권의 제한은 크지 않다.”는 취지다. 2006년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당시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문구가 의료법에 추가됐다.

A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5일이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항소심 공판에서 “2006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건 장애인의 취업 기회가 확대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이후 정치권은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넓히려는 노력이나 이미 50만명이 넘어버린 비시각장애인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를 외면해 왔다.”고 했다.

(출처/경향신문)